

수원고등법원 2021. 7. 27 선고 2020나16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양창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박태동, 이견

피고, 피항소인 1. B종중

2. C종중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기정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7. 27.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6. 4. 선고 2019가합1244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종중(이하 ‘피고 대종중’이라 한다)은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소종중’이라 한다)에게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7. 5. 15. 접수 제158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소종중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2. 12. 24. 접수 제4424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3면 아래에서 4행 “따라서”부터 아래에서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대중중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에 이어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진정한 소유자에게만 있으므로 말소등기의 이행상대방은 말소 대상 등기의 이전 등기명의자가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소장과 2021. 5.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소중중을 대위하여 피고 대중중에 대하여 피고 소중중에게로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고 하였으나, 피보전권리에 대한 언급은 없고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들 명의 등기의 순차 말소를 구하는 취지로 대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리를 반영하여 원고를 이행상대방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 5면 7행부터 6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증인 H는 원고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만들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소중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원고 등 개인이 임의로 처분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피고 소중중 명의로 변경했다는 이유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H는 부 S이 평소에 “이 산은 종손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종손인 원고의 명의로 해야 한다는 것이 명의신탁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2) 갑 제7,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L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같은 증거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의사능력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었고, 원고에게는 일방적 의사표시인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 6면 8행의 “원고가” 다음에 “재산세 납부 외에”를 추가한다.

○ 6면 아래에서 9행부터 3행의 “⑦”이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원고는 원고의 조부인 T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는데, 이를 원고의 부 S이 1939. 2. 장자상속하였고, 1971. 9. 16.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는데, 토지조사부에 T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19호증), 그 취득 경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고 피고 소중중이 T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2002년경 피고 소중중 명의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10년 이상 원고가 피고 소중중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11.경 피고 소중중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포함한 4,000평의 분할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 8면 14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소중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중중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처분결의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 대중중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도 이유 없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홍, 판사 장지용, 판사 이봉락

별지

1. 평택시 G 임야 47,538㎡
2. Q 임야 3,305㎡
3. R 임야 331㎡. 끝.

1)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가 말소등기의무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나, 일단 청구취지 기재대로 둔다.